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3
----------	----

제출연월일 : 2003년 월 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제안이유

- 상위법령의 제·개정 및 폐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현실에 맞게 위임사무를 조정하고,
- 시군에서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일부 사무를 도로 환수하여 처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주민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함

□ 주요골자

【보건위생과】

- 식품위생법의 개정에 따라 도지사의 권한사항이었던 “식품으로 기인한 질병 등으로 사망한 자의 사체 해부” 조항이 삭제되어 위임조항에서도 삭제하고,
- 도지사의 권한사항이었던 “조리사면허증 교부 및 면허취소 등” 사무가 시장·군수의 권한으로 변경되어 위임조항에서 삭제함

【원예유통과】

- 농산물품질관리법의 개정으로, 농림부장관으로부터 도지사가 위임받아 시군에 재위임하여 처리하던 “농산물 원산지표시 등의 조사” 사무가 농림부장관과 도지사의 공동사무가 됨에 따라 위임 조항에 신설함

【축 산 과】

- 현재 시군에 위임되어 있는 “축산물 관련 영업장의 인·허가 등 사무”를 도에서 직접 수행하기 위해 위임조항에서 삭제함

【지역개발과】

-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국토이용계획 지형도면의 승인에 관한 사무” 등을 위임조항에서 삭제하고,
- 체육시설 등 일부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의 결정 및 변경 권한을 시군에 추가로 위임함

【교 통 과】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에 따라, 도지사의 권한사항이었던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 등 사무가 시장·군수의 권한으로 변경되어 위임조항에서 삭제하고,
-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도지사가 위임받아 시군에 재위임하여 처리하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사무”가 도지사의 권한사무가 되어 위임조항에 신설함

【도 로 과】

- 공공사업시행시 손실보상의 기준이 되었던 공공용지의취득및 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폐지되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 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도로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사무의 근거법령을 변경함

의안전문 : 별첨

신규조문 대비표 : 별첨

관계법령 발췌 : 별첨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제4항 및 제5조중 “건설종합본부장”을 각각 “종합건설사업소장”으로 한다.

별표 1의 권한위임사무중 보건위생과 소관 제38호, 제40호 및 제42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39호를 제38호로 하며, 제41호를 제39호로 한다.

별표 1의 권한위임사무중 축산과 앞에 원예유통과 소관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원예유통과	1	○ 농산물 원산지표시 등의 조사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8조 제1항 동법 제38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
	2	○ 과태료 부과·징수	

별표 1의 권한위임사무중 축산과 소관 제7호를 삭제하고, 제8호 내지 제14호를 각각 제7호 내지 제13호로 한다.

별표 1의 권한위임사무중 지역개발과 소관 제1호 내지 제4호, 제16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5호 내지 제9호를 각각 제1호 내지 제5호로 하며, 제10호 내지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여 제6호 내지 제11호로 하고,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제12호 및 제13호로 한다.

분야별	인원 번호	사 부 명	근거 법령
지역개발과	6	<p>○도시기반시설중 다음 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된 시군에 한함)</p> <p>가. 도로(중로이하의 도로)</p> <p>나. 주차장</p> <p>다. 궤도</p> <p>라. 사도</p> <p>마.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p> <p>바.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p> <p>사. 광장(중로 이하의 도로에 접한 광장)</p> <p>아. 공원(어린이공원에 한함)</p> <p>자. 공동구</p> <p>차. 공공주차</p> <p>카. 수도공급설비</p> <p>타. 전기공급설비(변전소에 한함)</p> <p>파. 가스공급설비(정압기 및 배관에 한함)</p> <p>하. 방송·통신시설</p> <p>기. 시장</p> <p>니. 열공급설비</p> <p>디. 학교(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한함)</p> <p>리. 운동장(종합운동장 제외)</p> <p>미. 공공청사(국가 및 도 기관 청사는 제외)</p> <p>바. 도서관</p> <p>시. 문화시설</p> <p>여. 연구시설</p> <p>저. 사회복지시설</p> <p>चे. 공공직업훈련시설</p> <p>커. 청소년수련시설</p> <p>타. 유수지</p> <p>파. 방화설비</p> <p>허. 저수지(댐 제외)</p> <p>고. 방풍설비</p> <p>노. 방수설비</p> <p>도. 사망설비</p> <p>로. 방조설비</p> <p>모. 하수도(종말처리장은 제외)</p> <p>보. 도축장</p> <p>소. 장례식장</p> <p>오. 종합의료시설</p> <p>조. 폐차장</p> <p>초. 체육시설(골프장, 스키장 제외)</p> <p>코. 폐기물처리시설</p> <p>토. 수질오염방지시설</p> <p>포. 하천(소하천에 한함)</p>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

분야별	일련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지역개발과	7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의 경미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결정 및 고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3항 및 제4항
	8	○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동법 제32조
	9	○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 고시	동법 제33조
	10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와 이에 관한 일합 및 고시	동법 제88조 내지 제91조
	11	○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보고서수리, 준공검사 및 준공검사필증 교부, 공사 완료공고	동법 제98조

별표 1의 권한위임사무중 교통과 소관 제6호를 삭제하고, 제7호를 제6호로 하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여 제7호로 하고, 제9호를 제8호로 하며,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여 제9호로 하고,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제10호 및 제11호로 하며,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야별	일련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교통과	7	○자가용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유상운송허가 및 임대 허가 나.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 명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 동법 제74조
	9	○자동차의 사용정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0조

분야별 교통과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12	<p>○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사업의 등록 등</p> <p>나. 운송약관의 신고 등(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p> <p>다. 개선명령(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p> <p>라.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p> <p>마. 사업의 상속신고 등</p> <p>바. 사업의 등록취소 등(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p> <p>사. 자동차사용의 정지</p> <p>아. 과징금의 부과·징수 및 운용계획의 수립 시행(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p> <p>자. 청문(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p> <p>차. 운수사업의 실태조사 등</p> <p>카. 보고·검사 또는 질문</p> <p>타.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p> <p>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6조 및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에 의거 협회에 위탁한 사무를 협회의 해산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다음의 업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비한 등록사항 변경신고 · 사업의 휴지 및 폐지신고 · 등록사항변경신고(다만, 동법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양수 또는 상속신고를 포함하는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제외) ·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자 연수교육 · 운수사업자나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 대한 사업 등에 관한 보고서 또는 서류의 제출요청 	<p>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p> <p>동법 제7조</p> <p>동법 제12조</p> <p>동법 제14조</p> <p>동법 제15조</p> <p>동법 제17조</p> <p>동법 제18조</p> <p>동법 제19조</p> <p>동법 제20조</p> <p>동법 제32조</p> <p>동법 제44조</p> <p>동법 제50조</p> <p>동법 제3조제2항 단서</p> <p>동법 제16조, 제24조</p> <p>동법 제21조제2항</p> <p>동법 제28조</p> <p>동법 제44조제1항</p>
	13	○ 화물자동차운송수선사업의 등록 등	동법 제21조

별표 1의 권한위임사무중 도로과 소관 제4호 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도로과	4	아. 도로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 감정, 분할측량, 보상금 지급, 잔여지 매입, 소유권 이전 등)	공익사업에위한토지 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 법률 제61조

별표 4의 권한위임사무중 총무과 소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대상실과	일련 번호	사 무 명	위임대상기관	근거 법령
총무과	5	○ 6급 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소내 전보권	충청북도종합건설 사업소장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분야별	입법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분야별	입법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보건 위생과	1~37	<생략>		보건 위생과	1~37	<현행과 같음>	
	38	○조리사 면허증 교부 및 재교부(다만, 면허증 최초 교부 당시 주소지가 타 시도인 경우는 제외)	식품위생법 제36조, 동법시행규칙 제46조 및 제47조		38	<삭제>	
	39	<생략>			39	<현행과 같음>	
	40	○식품 등으로 인한 질병 또는 그에 기인하여 사망한 사체 해부	동법 제68조			<삭제>	
	41	<생략>				<현행과 같음>	
42	○조리사면허 취소 및 업무 정지(다만, 면허증 최초 교부당시 주소지가 타 시도인 경우는 제외)	동법 제63조, 동법시행규칙 제48조		<삭제>			
원예 유통과		<신설>			1	○농산물 원산지표시 등의 조사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8조제1항
		<신설>			2	○파티클 부파·집수	동법 제78조 제2항제2호 내지 제4호
축산과	1~6	<생략>			1~6	<현행과 같음>	
	7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영업장의 출입·검사·수거에 관한 사무 (축산물물의 수거검사 사무 제외) 나. 영업의 허가 및 중요한 사항의 변경허가 다. 영업의 휴업·재개업·폐업 및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수리 라. 영업의 조건부 허가 및 조건이행의 신고 수리 마. 품목제조보고 및 중요한 사항의 변경 보고의 처리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9조 동법 제22조 동법 제22조 동법 제23조 동법 제25조			<삭제>	

현행				개정안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축산과	7	바. 영업의 지위승계 신고 수리 사. 허가의 취소 및 영업의 정부 또는 일부정지 아.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부 자. 시설개수 변경 차. 축산물의 압류·폐기 또는 회수처분에 관한 사부 카. 공표명령 타. 영업소의 폐쇄 조치 파. 정문에 관한 사무 하. 과태료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 처리	동법 제26조 동법 제27조 동법 제28조 동법 제35조 동법 제36조 동법 제37조 동법 제38조 동법 제43조 동법 제47조	축산과	7	<삭제>	
	8~ 14	<생략>			7~ 13	<현행과 सम>	
지역개발과	1	○국토이용 계획 지형도면 승인에 관한 다음 사무 가. 국토이용계획으로 정하여진 용도지역을 표시한 지형도면의 작성 제출 나. 승인된 지형도면의 고시 및 열람	국토이용관리법 제12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동법 제12조 제3항	지역개발과		<삭제>	
	2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한 토지 사용 권고	동법 제21조			<삭제>	
	3	○국토이용관리법(이법에 의하여 규율 또는 규율된 법령을 포함한다.)에 의한 변경 및 의견진술 기회부여	동법 제26조			<삭제>	
	4	○용도지역에는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에 따른 의견 협의	도시계획법 제83조			<삭제>	

현행			개정안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지역 개발과	5~9 <생략>		지역 개발과	1~5 <현행과 같음>	
10	○도시가간시설중 다음 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된 시군에 한함) 가.~아.<생략> 자. <u>관광달</u> <신설> 차. <u>공공용지</u> 카. <u>수도</u> 타.~더.<생략> 러. <u>운동장(종합운동장 및 골프장 제외)</u> 머.~피.<생략> 허. <u>저수지</u> 고.~조.<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u>도시계획법</u> 제24조	6	○도시가간시설중 다음 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된 시군에 한함) 가.~아.<현행과 같음> <삭제> 자. <u>공동산</u> 차. <u>공공공지</u> 카. <u>수도공급설비</u> 타.~타.<현행과 같음> 러. <u>운동장(종합운동장 제외)</u> 머.~피.<현행과 같음> 허. <u>저수지(담 제외)</u> 고.~조.<현행과 같음> 총. <u>체육시설(골프장, 스키장 제외)</u> 교. <u>메기물처리시설</u> 토. <u>수질오염방지시설</u> 포. <u>하천(소하천에 한함)</u>	<u>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u> 제30조
11	<u>도시계획법시행령</u> 제32조의 경미한 도시계획의 변경결 정 및 고시	<u>도시계획법</u> 제24조제5항 내지 제6항	7	○ <u>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 법률시행령</u> 제25조의 경 미한 도시관리계획의 변 경결정 및 고시	<u>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u> 시행령 제25조 제3항 및 4항
12	<u>도시계획에 관한 시행도연의 고시</u>	<u>도시계획법</u> 제26조	8	○ <u>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 행도연의 고시</u>	<u>동법</u> 제32조
13	<u>도시계획결정의 실효 고시</u>	<u>도시계획법</u> 제27조제2항	9	○ <u>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 고시</u>	<u>동법</u> 제33조

현행				개정안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지역개발과	14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와 이에 관한 곳잡 및 고시	도시계획법 제61조 내지 제63조		10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와 이에 관한 열람 및 고시	동법 제88조 내지 제91조
	15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보고서 수리, 준공검사 및 준공검사 필증 교부, 공사 완료 공고	도시계획법 제70조		11	<현행과 같음>	동법 제98조
	16	○도시계획구역외의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준용(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된 시군에 위임된 시설에 한함)	도시계획법 제97조			<삭제>	
	17~18	<생략>			12~13	<현행과 같음>	
교통과	1~5	<생략>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의 의거 교통연락망가 심의필요 사업 및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교통과	1~5	<현행과 같음> <삭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0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78조
	6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의 의거 교통연락망가 심의필요 사업 및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6	<현행과 같음>	
	7	<생략>			7	□ 자가용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유상운송허가 및 임대 허가	
	8	○ 자가용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유상운송허가 및 임대 허가			8	나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 명령 <삭제>	
	9	<생략>		8	<현행과 같음>	동법 제74조	

현행				개정안			
분야별	일련번호	사부병	근거법령	분야별	일련번호	사부병	근거법령
교통과 (속)	10	○ 자동차의 사용정지	<u>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제10조</u> <u>화물자동차운수 사업법 제8조</u>	교통과 (속)	9	○ 자동차의 사용정지	<u>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제10조</u>
	11~12	<생략> <신설>			10~11	<현행과 같음>	
				12	○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업의 종류 등 나. 운송약관의 신고 등 (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다. 개선명령(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라.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 마. 사업의 상속신고 등 바. 사업의 등록취소 등 (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사. 자동차사용의 정지 아. 파징금의 부과·징수 및 운용계획의 수립 시행(제24조에서 준용 하는 경우를 포함) 자. 칩문(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차. 운수사업의 실태 조사 등 카. 보고·검사 또는 질문 단. 배타료의 부과· 징수 등	<u>화물자동차운수 사업법 제3조</u> <u>동법 제7조</u> <u>동법 제12조</u> <u>동법 제14조</u> <u>동법 제15조</u> <u>동법 제17조</u> <u>동법 제18조</u> <u>동법 제19조</u> <u>동법 제20조</u> <u>동법 제32조</u> <u>동법 제44조</u> <u>동법 제50조</u>	

원 행				개 정 안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교통과 (속)		<신설>		교통과 (속)	12	<p>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6조 및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에 의거 협회에 위탁한 사무를 협회의 예산 등 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다음의 업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미한 등록사항 변경신고 · 사업의 휴지 및 매지 신고 · 등록사항변경신고 (다만, 동법 제14조 및 제15조의규정에 의한양도·양수 또는 상속신고를 포함 하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제외) · 동법 제28조의 규정 에 의한 경영자연수 교육 · 운수사업자나 화물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 대한 사업 등에 관한 보고서 또는 서류의 제출 요청 	<p>동법 제3조 제2항 단서 동법 제16조, 제24조 동법 제21조 제2항</p> <p>동법 제28조</p> <p>동법 제44조 제1항</p>
		<신설>			13	<p>○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의 등록 등</p>	동법 제21조

현행				개정안			
분야별 일련 번호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분야별 일련 번호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도로과	1-3	<생략>		도로과	1-3	<현행과 같음>	
	4	가.~사.<생략> 아. 도로관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 감정, 분할 추방, 보상금 지급, 잔여지 매입, 소유권 이전 등)	공공용지의취득 및손실보상에 관한특별법 제3조		4	가.~사.<현행과 같음> 아. <현행과 같음>	분의사업용위한 토지등의취득및 보상에관한특별 제61조
	5	<생략>			5	<현행과 같음>	

[별표 4]

현행					개정안				
대상 실과	일련 번호	사 부 명	위임대상 기관	근거 법령	대상 실과	일련 번호	사 부 명	위임대상 기관	근거 법령
총무과	1-4	<생략>			총무과	1-4	<현행과 같음>		
	5	○6급 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본부내 전보권	충청북도 건설교통 본부장	지방공 무원법 제6조 제2항		5	○6급 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소내 전보권	충청북도공 무원(건설)의 소장	지방공 무원법 제6조 제2항
	6-7	<생략>				6-7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제95조(사무의위임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식품위생법】

제36조 (조리사의 면허) 조리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기술분야의 자격을 얻은 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제63조 (면허취소등)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리사 또는 영양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 조리사가 그 조리업무에 있어서 식중독 기타 위생상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게 한 때
3.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이를 사용하게 한 때
4.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68조(사채해부) (삭제)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8조(원산지의 표시 등의 조사) ①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의 표시여부·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원산지표시대상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수거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농산물의 유통량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시기 등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수거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제13조제2항·제18조제3항 또는 2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거·조사·열람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5조제2항 또는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원산지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3항 또는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의 표시방법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방법을 위반한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2. 원산지표시대상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하는 자로서 제1항제1호중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항제2호중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한 자
4. 제1항제3호중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한자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9조(출입·검사·수거) ①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영업자로 하여금 축산물의 검사결과 및 수출입실적등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관으로 하여금 영업장에 출입하여 축산물·시설·서류 또는 작업상황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축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작업장·축산물운반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산물판매업을 제외한 그 이후의 판매·유통단계에 있는 축산물에 대한 위생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행한다.

제22조(영업의 허가) ①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축업·집유업 또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업장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동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보관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업장별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③(생략)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영업을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조건부 허가 및 조건이행의 신고)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었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25조(품목제조보고)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축산물을 가공하는 때에는 그 품목의 제조방법 설명서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6조(영업의 승계) ①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30일 이내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22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규정에 의한 승계의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7조(허가의 취소등)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4조제5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제2항·제3항, 제13조제2항·제4항, 제14조제1항, 제17조, 제18조, 제22조제4항, 제25조, 제29조제2항·제3항, 제30조제2항·제3항, 제31조,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2. 제22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3. 제2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35조, 제36조제1항·제2항 또는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5. 축산법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도축장에서 반출한 때(도축장의 경영자에 한한다)
6. 축산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급판정업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도축장 경영자에 한한다)
7.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해서 6월이상 휴업하는 경우
8.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제28조(과징금처분)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5항, 제17조 또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35조(시설개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시설이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영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설의 개수를 명할 수 있다.

제36조(압류·폐기 또는 회수) ①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검사판으로 하여금 이를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그 축산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용도·처리방법등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제4조제5항 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축산물

2.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축산물
3.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축산물
4.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처리·가공한 축산물
5. 삭제
6. 제3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축산물

②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영업자에 대하여 유통중인 당해 축산물을 회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당해 축산물의 원료·제조방법·성분 또는 그 배합비율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7조(공표) ①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에게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게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폐쇄조치)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후에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영업소를 폐쇄하게 할 수 있다.

제43조(청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7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2항 또는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25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4. 제29조제1항·제2항·제3항, 제30조제1항·제2항·제3항 또는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6.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수료를 징수한 자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제30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①시·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②시·도지사는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입

안하여 결정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지구단위계획중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52조제1항제4호중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에 관한 사항(제4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한한다)
2. 제52조제1항제5호의 사항
3. 제52조제1항제6호중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④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때(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 한한다)에는 그 도시관리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④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척 이상의 지형도를 사용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로써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내용에는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여 고시하지 아니함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33조(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 ①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없는 경우(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의 고시에 갈음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도시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①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건설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를 제외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은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자금계획 및 시행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제89조(도시계획시설사업의 이행담보) ①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정부투자기관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액의 산정 및 예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0조(서류의 열람 등)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인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2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지구안의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내에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1조(실시계획의 고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98조(공사완료공고 등) ①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건설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를 제외한다)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한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고 공사완료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완료공고를 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하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완료공고를 함에 있어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⑥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건설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를 제외한다)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맡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⑦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하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완료공고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①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 다만, 제3항 각호 및 제4항 각호의 사항과 관계 법령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사항을 제외한다.

1. 광역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입안한 도시관리계획
2.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에 대하여 해제 이후 최초로 결정되는 도시관리계획
3. 2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도시관리계획

②법 제30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할 것. 이 경우 법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도시계획위원회에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분과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분과위원회의 위원 전원을 공동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 수는 25인 이내로 할 것
3. 공동위원회의 위원중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4.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시·광역시의 경우에는 부시장, 도의 경우에는 부지사로 할 것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건설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제외한다)을 변경할 수 있다.

1. 단위 도시계획시설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인 시설부지의 변경인 경우(도로의 경우에는 시점 및 종점이 변경되지 아니하고 중심선이 종전에 결정된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며, 공원 및 녹지의 경우에는 면적이 증가되는 경우에 한한다)
2. 지형사정으로 인한 도시계획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한 시설부지의 불가피한 변경인 경우
3.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인 경우
4.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인 경우
5.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를 농림지역으로 결정하는 경우
6.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하는 경우
7.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④지구단위계획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건설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2. 가구(제4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3.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4.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5. 제46조제6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
 6.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
 7.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8.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도시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9.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 ⑤법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도지사가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도의 공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1. 법 제2조제4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계획이라는 취지
 2. 위치
 3. 면적 또는 규모
 4.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 ⑥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다른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하는 때에는 당해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제73조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금지)** ①사업용자동차외의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는 유상(자동차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용자동차를 출퇴근시 함께 타는 경우
 2. 천재지변, 긴급수송, 교육목적용을 위한 운행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
-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상운송허가의 대상·기간 등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4조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 ①시·도지사는 자가용자동차를 사용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1. 자가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때
2. 제7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임대한 때

②제80조의 규정은 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을 금지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80조 (자동차의 사용정지) ①운송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기간을 정하여 한정면허를 한 경우 당해 면허기간이 종료된 때
2. 제17조제1항 및 제2항(제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휴지·폐지의 허가 또는 신고가 있을 때
3.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등록·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 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을 받은 때

②시·도지사는 운송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정지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받은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당해 운송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휴지기간이 종료된 때
2.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처분기간이 종료된 때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환받은 운송사업자는 이를 당해 자동차에 달고 시·도지사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 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 (운송약관) ① 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2조 (개선명령) 시·도지사는 안전운행의 확보, 운송질서의 확립 및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3. 운송약관의 변경
4. 화물자동차의 구조변경 및 운송시설의 개선
5. 삭제
6. 화물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
7. 화물운송 및 자동차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을 위한 공제 또는 보험에의 가입
8. 삭제
9. 삭제
10. 그 밖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4조(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등) ①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수인의 주소지(법인인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운송사업자인 법인이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운송사업자인 법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을 때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되는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제4조의 규정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5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①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피상속인의 사망후 60日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휴지·폐지신고) ①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취지를 영업소 기타 일반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7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취소등) ①시·도지사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감차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
2.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한 때
3.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이 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조치명령에 위반한 때
9. 삭제
10. 삭제
11.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
1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제18조 (자동차사용의 정지) ①운송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이 효력을 잃은 때
2.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휴지·폐지 신고를 한 때
3. 삭제
4.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때
5. 감차를 목적으로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차조치명령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 (과징금의 부과) ①시·도지사는 운송사업자가 제1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처분이 당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은 다음 각호의의 용도로는 사용(보조 또는 용자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

1. 화물터미널의 건설 및 확충
2. 공동차고지의 건설 및 확충
3. 경영개선 기타 화물에 대한 정보제공사업등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⑤시·도지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0조 (청문) 시·도지사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등록) ①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운송주선사업자"라 한다)가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등록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사무실의 면적,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 (준용규정) 제4조, 제7조, 제8조, 제10조(동조제5항 및 제7항을 제외한다), 제11조, 제12조(동조제4호 및 제7호를 제외한다),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7조(제1항제11호를 제외한다),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은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제10조제6항 및 제12조제3호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운송약관"을 "운송주선약관"으로 본다.

제28조 (경영자연수교육) 시·도지사는 운수사업자의 경영능력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영을 담당하는 임원(개인인 경우에는 운수사업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경영자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2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실태조사등) ①시·도지사는 경영개선 또는 운송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운수사업자로부터 그 업무·재산등에 관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수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실태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운수사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8조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고) ①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화물자동차(이하 "자가용화물자동차"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물자동차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39조 (유상운송의 금지)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당해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 (차량충당조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신규등록·증차 또는 대폐차에 충당되는 화물자동차는 차령 3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 (보고·검사)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수사업자나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대하여 당해 사업이나 당해 화물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수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제45조 (권한의 위임)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0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조제2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임 및 요금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약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3의2.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송사업자(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수종사자가 소속된 운송사업자(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8. 제14조 제1항·제2항 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양도·양수·합병 또는 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지·폐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 삭제
11.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12.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3.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송주선사업자
- 13의2.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 또는 용자금을 보조 또는 용자 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14.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15.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15의2.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6.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사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7. 삭제
18. 삭제

19.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허위의 보고를 한 자
20.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자
21.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②제1항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이를 부과·징수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 제61조(사업시행자 보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